



종합판정 : 상기시험확인함

시험검사원 : 이경아

시험검사책임자 : 박주성

※ 위 판정은 의뢰된 시험·검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.

※ 지면이 부족한 경우 시험·검사 항목 및 결과란은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.

※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·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·검사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·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.

2020년08월11일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



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

T:02-570-3241

F:02-570-3243